



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(해양수산부령 제402호, 2008. 1. 31 제정)

○ 분뇨오염방지설비 설치 대상선박 변경

- 위생설비 중 대변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은 분뇨오염방지설비대상이 아님
-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(최대승선인원이 16명 미만 부선 제외)
- 최대승선인원이 16명 이상인 선박 (어선의 경우 2008. 1.31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)

○ 유해방오시스템에 대한 규제 (AFS 협약 수용)

- 유기주석화합물이 포함된 방오도료의 선박에서의 사용을 금지함 (이미 선박에 유해방오도료가 사용된 경우 완전 제거하거나 밀봉도장하도록 함)
-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은 방오시스템검사를 받아야 함

○ 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

-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(합계출력 130킬로와트 미만의 내연기관이 설치된 부선을 제외한다)은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연료유공급서 및 견본을 선박에 보관하여야 함
 - 연료유공급서 : 3년
 - 연료유 견본 : 당해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(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함)
- 연료유를 공급받은 선박의 선장은 연료유의 성분이 의심되는 경우 선박급유업자에게 성분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

○ 중간검사 시기 조정

- 다음의 선박은 정기검사 후 2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3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검사시기에 한번의 제1종 중간검사만 받는 것으로 변경
- 총톤수 50톤 미만 유조선
- 여객선을 제외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유조선 외의 선박

○ 상태평가 검사 대상선박 및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을 정함